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1가합534551, 2022가합5085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 · 손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황서웅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석

변론 종결2023. 5. 12.

판결 선고2023. 8.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074,678원 및 그 중 192,764,778원에 대하여는 2020. 10. 7.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8,309,9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2021.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1. 6. 14. 접수 제23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 그룹의 자회사로, 담배 및 관련 물품을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7. 6. 11. 원고에 입사하여 국내외 시장 분석 및 고객 수요 예측을 통한 마케팅전략 기획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 SPI팀(Strategic Planning Insights Team)에서 Insights Manager로서 타 담배회사의 제품 및 마케팅전략을 모니터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퇴직합의 및 퇴직합의금 지급

1) 원고는 2020. 7. 6.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합의(이하 '이 사건 퇴직합의'라고 하고, 그중 퇴직합의금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본 문서는, 귀하(피고 B)과 원고(이하 '회사')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있어 귀하가 받게 되는 모든 보상 및 혜택('퇴직합의금')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인바, 본 문서에는 또한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와의 고용계약은 2020. 9. 30.자로 종료합니다. 귀하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0. 9. 30.입니다.

1. 보상

기본급 및 복리후생 - 귀하는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기본급과 복리후생 혜택을 지급받습니다.

2020년 EIS1) 보너스 - 귀하의 직속상사가 귀하에게 부여한 업무를 2020. 9. 30.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하며, 2020년도 EIS 보너스 결과에 따라 Meets expectation 성과기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2021. 4. 급여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보상 - 2020년 부여된 연차를 근거로 하여 퇴사일 전 사용하지 않은 모든 연차는 보상됩니다.

퇴직합의금 - 귀하는 2020. 9. 30.까지 귀하의 직속상사와 동의한 내용의 업무를 완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퇴직합의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직속상사와 동의한 퇴직일 이전에 조기 퇴직할 경우에는 아래의 어떠한 퇴직합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본 퇴직합의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으며 금액은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등의 공제 전 금액입니다.

■ 퇴직합의금 : 192,764,778원

위의 보상은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위의 보상은 고용계약종료일(2020. 9. 30.)로부터 2주 이내에 당일 계좌이체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귀하의 퇴직금은 회사 정책에 따라 지급이 될 것입니다.

2) 그에 따라 피고 B은 2020. 9. 30. 원고를 퇴직하였고, 원고는 2020. 10. 7. 피고 B에게 퇴직합의금 192,764,778원(이하 '이 사건 퇴직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B은 재직 중이던 2020. 7. 24. 원고의 비용청구 전용 사이트(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2) 를 통해 '타 담배회사 제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4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매출전표'라고 한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8. 5. 피고 B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의 퇴사 이후 이 사건 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42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1. 3. 24. 피고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피고 B은 2021. 4. 27. 위 42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353,041원(위 42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 제8746호).

3) 피고 B은 '타사의 담배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영수증 파일을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6.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5795),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해서는 2021. 7. 5.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10. 15.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22. 3. 25.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사의 담배를 구입함에 있어 개인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자료로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는 사전자기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2021. 6. 22. 피고 B이 위 420만 원 외에도 2015. 1.부터 2020. 9.까지 합계 50,602,942원을 허위로 비용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이 2021. 7.경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계속해서 귀국하지 않음에 따라 2021. 11. 25. 조사 불가능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한편, 피고 B은 2021. 6. 14. 남편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마. 관련 규정

원고의 '회사 경비집행과 정산규정'(Expense Claim Policy), '직원 제공 차량에 관한 규정'(A회사 Policy On Benefit Car),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경비집행과 정산규정3)

[일반적 규정]

1. 직원들은 업무상의 이유로 사용한 모든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인을 하는 매니저는 발생한 비용이 예산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는 해당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지,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비용은 반드시 상급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만일 상급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는 하위매니저가 아닌 동급 또는 상위 매니저에게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비용청구는 원칙적으로 E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회사의 규정에 맞지 않는 비용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모든 비용은 영수증 원본의 첨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2009. 1. 1.부터 1만원 미만의 비용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이상의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비용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이상의 비용청구는 F의 email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금액이 중대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3개월이 경과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외부출장, 차량지원, OT 지원, 직원 benefit 및 expat 지원에 관한 기준은 HR policy 규정에 따릅니다.

[비용정산 내역]

1. 회식비 및 접대비

V.1.1 직원 간 회식비

- 범위 : 회사가 지원하는 직원 간의 회식비용(ex. 부서 간 회식, 회의, 업무로 인한 점심, 송별회 및 환영회 등)
- 결제 : 최상위 직급의 상급자
- 청구 : 지급신청서에는 부서명과 참여인원 명기
- 과도한 봉사료 및 부적절한 비용은 승인권자에 의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V.1.2 직원선물

- 범위 : Line manager의 승인을 득한 직원선물
- 한도 : 개당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시 부서장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직원을 위한 선물은 해당 부서의 회식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V.1.3 외부고객 접대비

- 범위 : 외부고객과의 업무상 목적의 접대비용, 외부고객과의 업무상 회의 및 학회비용
- 결제 : 접대하는 직원 또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의 상급자
- 결제 방법 : 가능한 한 법인카드 사용
- 청구 : 회사명, 동석자 수 및 접대목적
- 사업상의 이유로 접대상대방을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팀장과 세무팀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접대의 범위, 참석자 수 등은 적정해야 합니다.
- 과도한 봉사료 및 부적절한 비용은 승인권자에 의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청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대의 목적, 접대 상대의 회사명, 참석인원, 부서

3. 그 외의 비용

V.3.1 야근 식대

- 범위 : 오후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A4) 및 G 직원의 저녁 식사비
- 1인당 8,000원까지 지원
- 청구 : 모든 참석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영수증에는 식사 메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급 제한 : 인당 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및 야근을 위한 저녁식사 외의 목적의 청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V.3.3 문구비

- 범위 :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류, 지사 또는 본사 운영을 위해 구매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 청구 : 영수증 및 업무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비정산 절차]

1. 직원은 모든 영수증을 scan하여 첨부한 후 E 시스템을 통하여 경비청구를 해야 합니다.
3. 해당 매니저는 E 시스템에서 직원의 영수증 사본이 첨부된 경비청구 내역을 확인한 후에 승인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

2.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

- a. 법인 신용카드는 오로지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b.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로 청구될 대부분의 경비의 사용은 법인 신용카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법인 신용카드 사용자에 의해 신청된 모든 경비의 사용은 해당 매니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직원 제공 차량에 관한 규정

2.0 적용범위

본 규정은 Grade 35 이상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6.0 차량의 사용

2. 차량의 사용은 업무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8.0 차량의 비용 지출

1. 유류비 : 지급된 차량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유류비는 회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유류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는 차량사용자의 차량 Mileage와 유류비를 비교하여 허위 청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차량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차량사용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취업규칙

제11조(직원의 책임)

3. 각 직원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회사의 명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직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명성과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직원은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일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모든 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산 사용 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여, 매매, 증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규칙과 지시의 준수)

각 직원은 본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책, 절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동료 직원과의 협력 하에서 소속 상사의 지시와 조언에 따라 지체 없이 일을 인수하여 이행한다.

제76조(해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2. 직원의 잘못된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경우

7. 고의로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유발한 자

13. 인사위원회의 판단 또는 사회상규상 중대한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고발 또는 기소된 경우

17.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

18.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규정

제4조(징계사유)

1. 회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징계해고를 포함하여)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회사의 정책 및 제 규정의 위반

▶ 사회상규상 중대한 범법행위를 자행하였을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해고(당연면직 포함)할 수 있다.

▶ 고의로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유발한 자

- ▶ 인사위원회의 판단 또는 사회상규상 중대한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고발 또는 기소된 경우
- ▶ 4.1조의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
- ▶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21가합534551 사건의 갑 제1 내지 12, 57, 75호증, 을 제1, 2,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퇴직합의금 반환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합의금 192,764,778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사의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퇴직합의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라는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퇴직합의를 하였거나, 피고 B은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퇴직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은 '피고 B이 퇴직일까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퇴직합의 이후 위조된 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비용청구를 통해 420만 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은 실효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B은 2015. 1.부터 2020. 9.까지 남편인 피고 C 등 제3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비용 등 자신이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을 업무경비인 것처럼 비용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8,309,900원을 편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48,309,900원을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48,309,99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합의금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그 반환을 구하는 2021가합534551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 4일 후에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이 사건 퇴직합의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가)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B은 420만 원을 제외하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이 위 420만 원에 관하여 비용 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퇴직합의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합의 당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비용 승인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퇴직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의 퇴직과 원고의 퇴직합의금 지급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합의 중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만을 가분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상 명예퇴직 합의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급적으로 그 법률효과를 다룰 수 없다.

나)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은 해제조건부 약정이 아니라 피고 B의 예정된 퇴직일인 2020. 9. 30.이 도래하면 퇴직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한부 약정이다. 또한 피고 B은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비용은 전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나) 설령 일부 비용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B은 관리자들과 재무부서의 감독 및

승인 하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업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원고의 관행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비용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C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피보전채권을 초과하는 액수 상당의 유가증권과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등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퇴직합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 당시 피고 B과 퇴직합의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유(피고 B의 비위행위)는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B에게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다음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5. 1.경부터 2020. 9.경까지 약 300회에 걸쳐

합계 약 4,8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3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자신이 지출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고도 마치 업무상의 이유로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②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2호는 '직원의 잘못된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경우', 제7호는 '고의로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유발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방법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불법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은 2020년 EIS 보너스 등과 함께 '보상'의 항목으로서 기재된 것으로, '2020. 9. 30.까지 직속 상사와 동의한 내용의 업무를 완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퇴직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까지 함께 기재되는 등 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징계사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약정금으로 볼 수 있다.

④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퇴직합의를 하면서 퇴직금 외에 별도로 보상적 성격의 퇴직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B은 이 사건 매출전표를 통한 420만 원에 관한 비용청구는 이 사건 퇴직합의 이후이므로 이 사건 퇴직합의 당시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미 이 사건 퇴직합의 이전인 2015. 1.경부터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퇴직합의 이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 B은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상 명예퇴직 합의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급적으로 그 법률효과를 다룰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에 민법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B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2)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그 소속 관리자들을 통해 피고 B이 지출한 비용을 승인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퇴직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착오를 알고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나아가 회사는 기본적으로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업무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원고가 피고 B이 비용 청구 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등을 일일이 세세하게 검토하여 청구 비용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실질적 비용인지 여부까지도 빠짐없이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큰 잘못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그 내역이 불분명한 영수증을 반려하면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부취소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은 이 사건 퇴직합의의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이고,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원고는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퇴직합의는 고용관계 종료,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의 지급, 2020년 EIS 보너스 지급, 연차휴가 보상 등과 함께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포함하고 있고, 위 항목들은 각기 다른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서로 필연적인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퇴직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퇴직합의 직후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퇴직합의의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하였고, 이 사건 퇴직합의 중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 부분의 일부 취소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2021가합534551 사건의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을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합의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합의금 192,764,778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퇴직합의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0. 10. 7.부터 2021가합534551 사건의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퇴직합의금 약정에 관한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원고의 사기 취소 주장 및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실효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퇴직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이연퇴직소득세 35,145,050원(= 실제 납부한 소득세 43,076,166원 - 이 사건 퇴직합의금을 제외할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 7,776,570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192,764,778원 전부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이 퇴직금을 인출하면서 스스로 추가 납부한 이연퇴직소득세를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이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퇴직합의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55호증, 63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카드, N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2015. 1.경부터 2020. 9.경까지 자신이 지출하지 않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을 업무경비인 것처럼 비용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8,309,9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이 업무경비로서 비용 청구한 합계 48,309,900원 중 46,562,799원은 제3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이다. 제3자 명의의 카드를 통한 지출의 경우 그 자체로 일응 피고 B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사용한 내역이라는 점을 피고 B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 B은 그 개별적인 내역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영수증 사용이 허용된다거나, 유연한 비용청구 관행이 있었다거나, 유류비의 경우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등 오히려 피고 B이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3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원고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 동작구, 중구 등에서 결제되었거나, '야근' 식비로 청구되었음에도 휴일 또는 주간에 결제되거나, 서로 내역이 중복되는 등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 B이 제3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인 46,562,799원 중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19,641,200원의 경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가족카드로서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지출 시간, 내역 등에 더하여, ㉠ 피고 B은 피고 C이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비용 청구하기도 한 점, ㉡ 그 중 일부 내역의 경우 서로 중복되어 청구된 내역이 존재하거나(갑 제54호증과 갑 제55호증 참조),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조가 인정된 이 사건 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형식일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도 존재하지 않아 위조가 의심되는 내역(갑 제53호증의 7)도 존재하는 점, ㉢ 피고 B은 위 카드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그 업무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 C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19,641,200원이 업무관련성 없는 비용 지출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나아가 46,562,799원 중 12,510,890원은 피고 C이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고, ㉤

13,319,709원은 주유소의 유류비 결제 내역으로 피고 B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며, ㉔ 나머지 1,091,000원 역시 피고 B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다.

④ 피고 B이 업무경비로서 비용 청구한 합계 48,309,900원 중 1,747,101원은 피고 B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내역이다. 본인 명의 카드를 통한 지출의 경우 제3자 명의의 카드를 통한 지출과는 달리,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 있는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㉕ 피고 B 명의 카드 지출 내역은 대부분, '야근' 식비로 청구되었음에도 휴일 또는 주간에 결제되거나(갑 제24호증의 1, 17,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1, 4), 원고의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결제되었다(갑 제33호증의 1, 5).

㉖ 피고 B은 2017. 11. 29.에 지출한 204,000원(갑 제38호증의 1, 4)은 직원들 선물 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B이 제출한 을 제6호증은 결제 시각과 상관없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고, 을 제7호증은 'O'의 리뷰에 불과하다).

⑤ 피고 B은 원고의 관리자들이 업무관련성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승인하고 대체영수증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원고의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시하는 갑 제14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갑 제51호증의 4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직원들의 모든 영수증을 확인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비용인지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오히려 원고는 그 내역이 불분명한 영수증을 반려하면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기도 한 점(갑 제28호증의 1, 을 제9호증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행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업무관련성 없는 비용의 지출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왔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48,3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부터

2021가합534551 사건의 2021.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1.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① 192,764,778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법정이자, 지연손해금 포함)과 ② 48,309,900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이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2021가합534551 사건의 갑 제61호증, 2022가합508504 사건의 갑 제29, 30,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증여계약과 그 이후의 주식 등 처분 및 그 대금의 피고 C의 해외 계좌로의 송금 등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펀드 등은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6. 14.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주식, 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약 15일 후인 2021. 6. 30.과 2021. 7. 1. 등 무렵에 이를 모두 현금화하여 피고 C의 뉴질랜드 계좌로 송금하였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행위와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대금의 피고 C 명의의 뉴질랜드 계좌에의 송금행위는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2021가합534551) 소장을 피고 B이 송달받은 날(2021. 6. 10.)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기에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1	주식	23,150	
2	펀드	261,633,862	
3	신탁	187,042,378	압류금지
4	원화RP(환매조건부채권)	126,427	
5	외화RP(환매조건부채권)	85,890,403	
6	해외주식	12,382,379	
	합계	547,098,599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대금의 송금의 상대방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으로 동일하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2021가합534551)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1. 6. 10.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무렵에 이루어졌다.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을 위해 대출이 필요했는데 피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피고 B이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다면 이는 남편인 피고 C이 증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증자인 피고 B이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남편인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예정 여부나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C이 제출한 을 제5호증은 서울 중구 P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기사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기사이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면 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과 그 처분대금의 피고 C의 뉴질랜드 계좌로의 송금행위 역시 그 경위에 관한 피고 C의 설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 C과 달리 뉴질랜드 국적자가 아닌 피고 B이 국내에 소재하면서 뉴질랜드 계좌의 개설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 B의 뉴질랜드 계좌 개설 직후인 2021. 8. 9.경 모두 피고 B의 계좌로 환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등 처분과 피고 B의 뉴질랜드 계좌 개설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 등을 현금화하여 자신의 뉴질랜드 계좌로 옮기고자 하였다면, 자신의 뉴질랜드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 이 사건 주식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곧바로 자신의 뉴질랜드 계좌로 옮기는 것이 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등을 처분한 대금을 구태여 피고 C의 뉴질랜드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국내 계좌와 달리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에 대해서는 그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2021가합534551) 소장을 송달받는 등 원고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하여 현금화한 돈을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뉴질랜드 계좌로 일단 빠르게 송금하여 강제집행 우려가 해소되자 다시 자신 명의의 뉴질랜드 계좌로 환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대금 뿐만 아니라, 2021. 6. 28. '전세가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마저도 피고 C 명의의 뉴질랜드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행위와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 및 자신의 예금계좌에 보유한 돈의 남편 명의 해외 계좌로의 송금행위 등은 모두 원고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동일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

나)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피고 C은, 피고들이 뉴질랜드에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보유한 그 지분 상당액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제12, 1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뉴질랜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3) 2021가합534551 사건의 갑 제61호증, 2022가합508504 사건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뉴질랜드 부동산은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①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은 채권의 실효성 보장에 있다. 채권은 관념적 권리로서 급부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소송과 강제집행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을 없애버리면 강제집행은 주효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제도는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채권의 종국적 실현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해외 각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재산의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 등이 상당히 더 소요되는 등 난이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나 기능은 국내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해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드문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한민국 법원이 뉴질랜드 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판결을 기초로 한국 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뉴질랜드 부동산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에서의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의 종국적 실현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경우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의 대상 또는 집행면제의 대상 범위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강제집행의 허용 및 제한에 대한 입법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뉴질랜드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국제적으로 자본(자산)의 이동이 매우 빠르고 용이하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채무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 각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다. 만일 해외 재산까지도 국내 재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채권자로서는 해외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한 다음, 각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채권의 종국적 실현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반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바,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외 재산을 채권자취소제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주식 등 처분 및 그 대금의 피고 C의 해외 계좌로의 송금 등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가 보유한 적극재산에 이 사건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뉴질랜드 부동산 또한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나아가 그 외 피고 B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피보전채권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4) 따라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현석

판사안근홍

판사차현우

별지

- 1) 'Employee Incentive Scheme'의 약자이다.
- 2) (인터넷주소 1 생략)
- 3) 영문과 한글이 병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한글 부분만을 기재한다.
- 4) 원고를 의미한다.